

카지노출입관리지침

27차 개정 2019. 02.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제28조 제2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 [별표9] 및 [별표10] 그리고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회사'라 함)의 「카지노 이용약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카지노영업장 이용자의 출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지노영업장 출입에 관한 모든 관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분장)

- ① 카지노 출입관리를 위한 제 규정의 제·개정은 카지노정책실에서 총괄한다.
- ② 카지노영업장 이용자의 출입제한을 시행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업무는 안전실(카지노안전팀, 이하 시행부서 <삭제>)에서 담당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관리”라 함은 회사가 카지노영업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여부 및 출입제한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입제한”이라 함은 이 지침에 의거 카지노영업장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입정지, 입장거절, 퇴장조치 및 주의조치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출입금지 : 관련 법령 및 이 지침 등에 따라 기간의 정함 없이 카지노영업장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
 - 나. 출입정지 : 이 지침이 정한 특정사유 등에 의해 일정기간 카지노영업장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
 - 다. 입장거절 : 질서유지 및 고객 보호 등을 위해 입장거절 사유 소멸시까지 카지노영업장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
 - 라. 퇴장조치 : 카지노영업장 입장 후 영업행위 방해 등의 사유로 카지노영업장 외부로 안내하고 퇴장시점부터 퇴장 시점이 속한 영업일의 영업종료시까지 입장을 거절하는 것
 - 마. 주의조치 : 이 지침이 정한 특정 사유가 재발생한 경우 출입제한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
3. “출입제한 해제”라 함은 출입금지 사유 해소, 출입정지 기간 경과 등에 따라 출입제한 대상자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원 등”이라 함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일로부터 [별표3]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전(前) 임·직원을 말한다.

5. “협력업체 직원 등”이라 함은 회사를 근무처로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용역(인적, 단가)계약에 따른 협력업체 임·직원 및 퇴직일로부터 [별표3]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전(前) 협력업체 임·직원을 말한다.
6. “가족”이라 함은 직계혈족(미성년자 포함) 및 배우자를 말한다.
7. “지역주민”이라 함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고시한 폐광지역 진흥지구 중 [별표1]에서 지정한 지역에 있는 주민(해당지역 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포함)을 말한다.
8. “본인확인”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9. “카지노영업장”이라 함은 카지노의 일반 및 회원용 영업장(부대시설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7.9.22.]
10. “카지노 출입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출입관리 심의위원회”라 함)라 함은 「카지노출입관리지침」 적용에 있어 고객의 이의신청, 출입제한 적용 및 해제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출입관리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성희롱”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출입관리)

- ① 회사는 카지노영업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별 기준 및 제한사항 등을 구분하여 정하며 세부기준은 [별표3]와 같다.
- ② 회사는 출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반행위 당사자가 이미 퇴장하였거나 회사의 본인확인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카지노 출입정보(입장권 발행 주민등록번호 및 CCTV자료 등)를 이용하여 출입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시행부서는 출입제한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 당사자 본인확인 또는 출입제한 사유의 입증 등을 위해 본인확인 요청과 사실 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징구할 수 있고, 위반행위 당사자와의 대화 내용은 녹음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녹음을 하거나 제3자가 대화에 참여할 시 동의를 득한 후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 ④ 카지노영업장 외의 회사 영업시설 이용객의 경우 「영업시설 이용제한 지침」 및 「이용제한심의회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카지노영업장에 대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카지노영업장의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영업장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출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제한 절차 진행을 위한 임시 출입제한을 할 수 있

다.

- ⑦ 제6항의 임시 출입제한 기간은 이의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출입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일까지로 하고, 출입제한 기간 산정 시 임시 출입제한 기간을 포함하여 기산한다.

제6조(출입금지)

- ① 회사는 관련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카지노 영업장의 출입을 금지 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및 카지노영업준칙(문화부고시)에서 정한 출입금지 대상자
 2. 회사의 영업시설 이용제한 지침에 따라 등록된 자
 3.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회사가 정한 출입금지 대상자
 4.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을 위해 KLACC에서 지원받은 대상자 등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금지 대상자의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
- ③ 제1항 제1호 중 미성년자로서 호텔 및 카지노 관련학과 대학생 또는 학원단체의 영업장 견학 등을 목적으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관련부서는 **시행부서가 정하는 서식**의 카지노 방문협조 요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정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카지노영업장의 출입을 못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절차 관련 위반 행위자
 2. 영업장 질서유지 위반 행위자
 3. 게임진행 및 영업방해자
 4.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위반자 등
- ② 제1항의 세부내용은 [별표5]과 같다. [별표5]에서 정한 금지행위 중 카지노영업장 외부에서 위반행위를 한 카지노고객에 대해서도 카지노영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출입정지 사유 및 기간은 출입정지 전산등록일 당시 시행중인 출입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요청에 의한 출입제한)

- ① 카지노고객 본인 또는 가족, 관련부서 등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요청받은 대상자의 카지노 출입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출입제한 요청은 [별표7]에 따른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출입제한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전산등록을 해야 한다.
- ② [별표7]에 따른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을 하고 **보완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반려한다.
- ③ 요청에 의해 출입제한 중인자에 대하여 카지노고객 본인 또는 가족이 출입제한을 중복 또는

교차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기존 제한과는 별개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④ 동일인에 대한 본인 및 가족 요청에 의한 출입제한은 각 제한 요청건별 적용하며 그 횟수는 합산하여 계산한다.
- ⑤ 고객 본인이 KLACC에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월 15일 이내로 출입일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전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⑥ 본인 또는 가족의 출입제한 요청시 선택할 수 있는 출입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회차 : 1년, 3년 또는 영구 출입제한 중 선택
 - 2. 2회차 : 3년 또는 영구 출입제한 중 선택
 - 3. 3회차 : 영구 출입제한만 가능

제9조(입장거절)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카지노영업장의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표 6]과 같다.
 - 1. 카지노 영업장의 원활한 운영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자
 - 2. 본인 또는 타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3. 불법행위 또는 기타 영업목적 등으로 카지노 영업장을 출입하려는 자
 - 4. 기타 출입관련 회사 요구사항에 협조하지 않는 자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하이원리조트카드 의무발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카지노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 1. 2개월 연속 15일 출입자
 - 2. 분기 30일 초과 출입자
 - 3. 2분기 연속하여 분기별 30일 초과 출입자
- ③ 회사는 제2항 제1호, 제3호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리조트카드 발급을 받더라도 중독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일정기간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 1. 1회 익월 1개월 입장거절
 - 2. 2회 익월부터 2개월 입장거절
 - 3. 3회 <삭제> 익월부터 영구 출입정지
- ④ 회사는 화재 등 재해 및 안전사고로부터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객의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영업장내 인원산정방법 및 적정인원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별표6]에 따른 입장거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입장거절 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입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관련부서 요청에 따라 출입관리심의위원회 의결로 출입금지 할 수 있다.

제10조(퇴장조치)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퇴장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1. 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출입제한(출입금지, 출입정지, 입장거절 등)자가 카지노영업장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2. 「카지노이용약관」 및 「게임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관련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 ② 회사는 카지노영업장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퇴장요구에 불응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담당직원에 의하여 강제 이동 또는 강제 퇴장케 할 수 있다.

제11조(주의조치)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의조치 사유를 반드시 전산으로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다만, [별표5] 제3호 바는 예외로 한다.
 1. 본 지침상 직접 적용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유사 전례가 없어 본 지침의 적용 여부가 애매하나 출입제한 조치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최근 1년간 입장기록이 20회 미만인 경우,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행위로 적발된 경우 [별표5]에 따라 제한내용 2회를 적용한다.
- ③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주의조치를 받은 후 동일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삭제> 시행부서는 출입제한 관련 출입관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의결일까지 임시출입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출입제한의 효력 등)

- ① 출입제한 효력은 회사가 출입제한 또는 임시 출입제한 대상자를 전산 등록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 ② 출입제한기간은 출입제한 전산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③ 카지노 고객의 출입제한 내용은 관련 부서 간에 상호 공유한다.

제13조(출입제한의 통보)

- ① 회사는 출입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출입제한 대상자가 출입제한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출입제한의 효력은 확인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 ③ <삭제>

제14조(이의신청)

- ① 출입제한 된 자가 출입제한 사유와 기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입제한을 인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출입제한 관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 ② 우편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우편 발송 소인일이 출입제한을 인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의 건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15조(요청에 의한 출입제한의 철회)

- ① 제8조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는 전산등록 전 출입제한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카지노고객 본인 또는 가족이 출입제한 전산등록 전 철회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10일 이내에 **시행부서가 정하는 서식에 따른** 출입제한 철회 요청서와 요청자 인감증명서(주민번호 뒤 6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회 요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출입제한 해제 등)

- ① 제6조(출입금지) 제2항에서 정한 [별표4]의 출입금지자와 제9조(입장거절) 제5항에 따른 출입금지자 중 제한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출입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별표4]의 제1호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성년에 이르면 금지사유가 해소되어 자동해제되며, [별표4]의 제2호에서 제4호, 제7호에서 제13호, 제16호는 해제가 불가하다.
- ② [별표4]의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본인 및 가족의 영구 출입제한(해제불가) 요청으로 출입금지 된 자는 최종 출입제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병원<삭제>으로부터 도박중독 문제가 해소 되었다는 치료확인서(진단서, 소견서 등)를 받았을 경우 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제가 가능하다.
- ③ 제7조(출입정지) 제2항에서 정한 [별표5]의 출입정지자 중 출입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출입제한은 자동해제된다. 단, 제8항에 따라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제7조(출입정지)에 따라 출입정지기간 1년이 넘는 자는 그 출입정지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경우 출입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
 1. 출입정지 사유가 된 위반행위 및 관련행위의 재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2. 기타 출입정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출입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⑤ 제8조(요청에 의한 출입제한) 제1항에 의한 출입제한자 중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가 해제요청을 할 경우 시행부서에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해제할 수 있다. 단, 본인 또는 가족 요청으로 출입제한된 자의 경우 **제8조 제6항의 출입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가 가능하며, 가족요청으로 출입제한 된 자가 출입제한 요청자와의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이혼, 사망 등)에는 본인이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호 내지 3호 삭제>

- ⑥ 제5항의 출입제한 해제요청은 [별표7]에 따른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⑦ 관내 읍사무소(고한읍, 사북읍)에서 귀가여비를 지원 받은자의 경우 출입정지일로부터 3년 경

과 후 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⑧ 회사는 타 고객의 보호 및 카지노영업장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신청에 따라 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입제한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 ⑨ 고객의 출입해제 내용은 관련 부서 간에 상호 공유한다.

제17조(귀가여비)

- ①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카지노 고객 본인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귀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에 의한 출입제한 요청 이전 제7조에 따라 출입정지된 자의 경우는 그 출입정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8조에 따라 본인, 가족, 관련부서 등의 출입제한 요청으로 출입제한 중인 자가 중복하여 본인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귀가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귀가여비 지급은 3년 또는 영구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영상판독 및 영상열람)

- ① 회사와 카지노고객 간에 카지노 출입절차 또는 게임 등과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담당직원이 영상판독 결과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당 영상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영상판독 결과 카지노고객의 출입제한행위가 확인된 경우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직원 등과 그 가족의 출입금지 및 해제)

- ① 회사는 직원 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카지노영업장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단 필요한 서류 등 세부사항은 [별표7]에 따른다.
- ② 직원 등의 범위는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타 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 ③ 협력업체 임·직원 본인의 경우 본인의 요청으로 출입금지 할 수 있다.
- ④ 본조에 따른 출입금지에 대한 해제 시 KLACC 상담은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게임참여 등의 금지)

- ① 직원 등 및 협력업체 직원 등은 회사 내 게임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업무목적(작업, 환전, 은행이용, 단체 여행객 안내 등) 방문객은 담당부서 승인절차를 거쳐 방문증을 패용한 후 영업장에 출입할 수 있으나 게임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카지노 방문절차는 담당부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지침의 게시 등)

회사는 고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카지노출입구 등 일정한 장소에 본 지침을 게시 또는 비치하고 (회사 홈페이지 게시 포함), 고객은 본 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지침의 개폐)

본 지침의 개폐는 영업마케팅본부장의 결정에 의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02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04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0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06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06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06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08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08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08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0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0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제한 해제신청 관련 경과 조치) 가족 및 본인의 출입제한해제 신청 횟수의 합산 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시행일 이전 해제신청 횟수(본인의 출입제한 신청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제한해제신청 불가)가 합산하여 비로소 3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회로 본다.

제3조(출입제한 해제기간 관련 경과 조치) 제9조 제3항의 규정은 이 지침 개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단, 출입제한신청이 이 지침 개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출입제한해제신청 가능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출입제한해제신청 가능기간이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도과된 경우에는 출입해제신청 가능기간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에도 해제신청 횟수는 부칙 제2조를 적용한다.
2. 출입제한해제가능기간이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이 지침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
가. 가족 및 본인의 출입제한신청 횟수가 합산하여 1회인 경우 3월
나. 가족 및 본인의 출입제한신청 횟수가 합산하여 2회 이상인 경우 6월

附 則 이 지침은 2010. 3. 12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10. 07. 26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10. 11. 15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11. 01. 01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11. 07. 01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13. 12. 01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14. 8. 18.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14. 10. 23.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15. 4. 10.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01.01.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③항은 2017.04.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제한 조치에 대한 적용)

출입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원인행위의 성립여부 및 출입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출입제한 해제에 대한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출입제한된 자에 대한 출입제한의 해제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附 則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7.01.09]

1. 이 지침은 2017. 2. 1.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③항은 2017.04.01.부터 시행한다.

2. 2016.12.31 개정된 출입관리지침 중 이 지침과 저촉되는 부분은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본 지침 시행일에 따른다.

附 則 이 지침은 2017. 10. 10.부터 시행한다.

附 則 이 지침은 2018. 00. 00.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 「신분증 및 본인확인 세부기준」의 외국인 본인확인기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02.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출입제한 관련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2항 단서 삭제(외국인 출입제한 예외 삭제)의 적용은 회사가 카지노 출입일수 운영내규」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정하여 시행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중독예방 목적의 영구 출입제한 관련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대상자에 대한 동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은 2019. 04. 01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주민 출입제한 대상지역 (제4조 제7호 관련)

| 구 분 | 태백시 | 삼척시 | 정선군 | 영월군 |
|------|-----|-----|---------------------|-----|
| 지정지역 | 전역 | 도계읍 | 사북읍, 고한읍 남면, 신동읍 | 상동읍 |

[별표2]

신분증 및 본인확인 세부기준 (제4조 제8호 관련)

□ 내국인 신분증 본인확인 기준

| 구분 | | 세부 기준 | 비고 |
|---------------------------------|-----|---|--|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확인서 포함) | | · 유효기간 내 인정 | · 舊 주민등록증 입장 불가 |
| 국내운전면허증 | | · 적성검사 및 갱신검사(과태료부과기간 포함) 내 인정 ※ 1년이상 갱신기간 경과된 운전면허증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등초본 첨부 | · 건설관리조종면허증, 수상 동력기구조정면허증 등 · 舊 운전면허증 입장 불가 |
| 복지카드 | 장애인 | · 지방자치단체 발행 카드에 한하여 인정 | |
| | 구입 | · 카드 유효기간 이내 인정 · 보건복지부 발행 카드에 한하여 인정 ·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등초본 첨부 | |
| 여권 | | · 만료기간 이내 인정 ·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등초본 첨부 | [참고] 내국인 여권 종류 ① 일반복수여권 : PM (Multiple Passport) ② 일반단수여권 : PS (Single Passport) ③ 관용여권 : PO (Official Passport) |
|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 | ·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등초본 첨부 | |
| 국가전문자격증 | | · 성명, 사진,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 ※ 주소가 미기재 되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등초본 첨부 | · 민간기업 발행 자격증 입장 불가 |
| 1회 입장권 발급 요청서 | | · 카지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직원확인을 통해 발급된 등초본 소지 | · 1회만 입장 가능 |

주) 모든 사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 외국인 본인확인 기준

| 구분 | 세부 기준 | 비고 |
|---------------------|---|---|
| 여권 | · 유효기간 내 인정 · 해외이주자의 경우 여권과 함께 영주자격증명서(카드, 썸 등 형태 무관/영주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장기체류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을 제시해야 함 | [참고] 외국인 여권 종류 ① 시민권 : P ② 일반거주여권 : PR (Residence Passport) ③ 외교관여권 : PD (Diplomatic Passport) (외국인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④ 여행증명서 : PT (Temporary Passport) (외국인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⑤ 일반복수여권 : PM (Multiple Passport) |
| 외국인등록증 | · 유효기간 내 인정 | - |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 | ·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 없음 |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 유효기간 내 인정 | - |
| 국제면허증 | · 유효기간 내 인정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1년) | · 각 국가별 운전면허증은 외국인으로 인정불가 (단 순수외국인은 인정) |
| 외국발행 시민권, 영주권 카드 | · 사진, 국적, 생년월일이 기재된 것만 인정 | - |
| 국내발행 운전면허증 | · 유효기간 내 인정 · 외국인(해외이주자 제외) 신분증에 해당되는 신분증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장이 가능 | - |
| 미군ID | · KATUSA 제외 | - |

□ 외국인 단체 입장

- 1) 입장권 발행부서는 인솔자인 가이드에게 고객명단을 제출받고 신원보증확인서를 작성한 후 입장권을 발행해 준다. 단, “카지노영업준칙 제4장 21조(고객출입관리) ③항에 의거 각 인별로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내국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의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 2) 입장권을 발행받은 외국인 단체고객의 본인확인인 인솔자(가이드)가 대상자 리스트 명단을 출입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제출된 명단 및 입장권 확인과정을 통해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입장을 허용할 수 있다. 그 이후 재 입장 시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입장권을 제시하여야만 입장할 수 있다.

[별표3]

출입관리를 위한 대상별 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 구분 | 적용대상 | | 제한내용 | |
|-------------------------------|---|--|---|---|
| 직원 등 | 現 임·직원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목적 외 출입금지 (단, 관련부서 방문투어 공문 시행 후 방문증 패용하여 투어 가능) | |
| | | 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금지 (단, 방문증 패용 후 투어 가능) | |
| | 前 임·직원 | 본인 | 정규직 (상임이사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사 후 1년간 출입정지 |
| | | | 계약직원 및 인턴직원, 비상임·사외이사, 아르바이트생, 교육생 / 실습생(딜러 및 서비스 아카데미), 타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사 후 3개월간 출입정지 |
| | | | 前 임직원 중 회사에 피해를 입혔거나, 고의·중과실로 징계를 받은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위위원회 의결 후 출입금지할 수 있음 |
| 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임직원 퇴직일 이후 해제 가능 | | | |
| 협력업체 직원 등 [개정 2016.12.31.] | 現 임·직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목적 외 출입금지 | |
| 前 임·직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사 후 3개월간 출입정지 | | |
| 지역주민 | [별표1]에 따른 지역주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금지 - 단, 지역주민 출입의 날 (매월 넷째주 화요일) 입장가능 | |
| 카지노 고객 | [별표5], [별표6], [별표7] 해당 고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안에 따라 출입금지, 출입정지, 입장거절 | |
| | 월별 16회 이상 장기입장 고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5회 초과일부터 당월 출입정지 (2009. 2. 1일부 시행) | |
| | 월 출입일수 조정 신청 고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 정한 기간내 출입일수 조정 신청 초과일부터 당월 출입정지 | |

[별표4]

출입금지 대상자 세부사항 (제6조 제2항 관련)

| 구분 | 출입금지 대상 | 비고 |
|-----|--|----------------------------|
| 1호 | ○ 미성년자 | 카지노영업준칙(문화부 고시)에 따른 금지대상자 |
| 2호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는 자 | |
| 3호 | ○ 국내외를 막론하고 불법행위 등으로 카지노업체에 피해를 입힌 경력이 있는 자 | |
| 4호 | ○ cheating행위, 전문 도박인(카드 카운터 등)으로 인정되는 자 | |
| 5호 | ○ 회사 서비스와 상품에 대하여 악의적인 불만 제기 및 과도한 보상 요구로 이용제한 및 금지고객으로 등록된 블랙컨슈머(악덕소비자) | 회사의 영업시설 이용제한 지침에 따라 등록된 자 |
| 6호 | ○ 본인 및 가족의 영구 출입제한요청자 또는 영구 해제불가 요청자 |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의 요청 |
| 7호 | ○ 본인 및 가족요청에 의한 출입정지가 3차에 이르는 자 | |
| 8호 | ○ 위해목적의 위협물 소지, 출입제한 등 카지노 입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출입구로 카지노 입장을 시도하거나 입장한 자 | 회사가 정한 금지대상자 |
| 9호 | ○ 사채관련 종사자 및 행위자 1) 전당사업 또는 사채업을 경영하거나 동종업에 종사하는 자 2) 사채 영업, 알선(금전거래 발생) 및 호객행위자 3) 채권채무 관련 폭력 및 영업방해 행위자 | |
| 10호 | ○ 본인 또는 타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 (회사 사업장 범위 내) 1) 방화시도, 유괴, 감금, 자해 행위, 자살 시도자 (자살 발언 포함) 2) 당사 시설물 손괴 및 폭파 발언자 (전화협박 등 포함) 3) 한정, 금치산자 및 정신이상자로 판명되거나 향정신성 약물 복용자 | |
| 11호 | ○ 영업장 질서 위반 및 카지노 게임 관련 부정·불법행위자 1) 영업장내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자 2) 영업방해 목적의 난동 행위자 3) 직원 등과 담합도모 등 부정·불법 게임 행위자 4) 게임관련 위조물품(카드, 칩스, 티켓 등) 및 위조 유가증권(지폐, 상품권 등) 제작, 유통, 사용 행위자 | |
| 12호 | ○ 사업장 내 불법도박·매춘 알선 및 행위자 | |
| 13호 | ○ 출입정지 누적으로 출입금지에 해당하는 자 | 관련부서 요청 |
| 14호 | ○ [별표1]에 따른 지역주민 (단, 매월 넷째주 화요일 입장 가능) | |
| 15호 | ○ 관련부서에서 요청하여 카지노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의결(자살발언자 포함)로 출입금지된 자 | |
| 16호 | ○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을 위해 KLACC에서 지원받은 대상자 1) 도박중독 치료비를 지원받은 자 2) 사회복지직업재활 지원을 받은 자 3) 개인회생절차 지원을 받은 자 4) KLACC에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상담 의뢰를 하고 영구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 | |
| 17호 | ○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출입을 금하여야 하는 자 | |

[별표5]

출입제한 위반행위 및 제한내용 (제7조 제2항 관련)

| 구 분 | 출입제한 위반행위 | | 제한내용 | | |
|--------------------------------|--|------------------------------|------|------|------|
| | | | 1회 | 2회 | 3회 |
| 1호 출입절차 관련 | 가. 위조 및 변조 행위 | 가1. 신분증 (공문서 등) | 1년 | 출입금지 | - |
| | | 가2. 입장권 | 1년 | 3년 | 5년 |
| | 나. 타인 신분증 사용행위 | 나1. 일 반 | 3월 | 6월 | 1년 |
| | | 나2. 출입제한자 | 1년 | 3년 | 5년 |
| | 다. 신분증 대여 행위 | 다1. 일 반 | 주의 | 1월 | 3월 |
| | | 다2. 출입제한자 | 1월 | 1년 | 3년 |
| | 라. 신분증에 주소지 이전 사항을 미 기록 및 허위 기재한 지역주민 | | 1년 | 3년 | 5년 |
| | 마. 신분증 이중 사용으로 입장을 시도하거나, 귀가여비를 중복 지급받은 자(미사용 신분증 등록고객 제외) | | 1년 | 3년 | 5년 |
| | 바. 기타 부정한 방법의 출입관련 위반행위 (ARS입장순번 다중 및 부정신청자 포함) | | 주의 | 1월 | 3월 |
| 사. 방문증 협조 받아 카지노에 입장하여 게임 참여행위 | | 1월 | 3월 | 6월 | |
| 2호 영업장 질서유지 관련 | 가. 언어폭력 행위 (모독, 욕설 등 공포 분위기 조성 및 게임방해 포함) | 가1. 직원 등 | 3월 | 6월 | 1년 |
| | | 가2. 영업장내 일체(고객상호 간 포함) | 1월 | 3월 | 6월 |
| | 나. 협박 및 신체폭행(폭행성 신체접촉 행위 포함), 상호 다툼 행위 | 나1. 직원 등 | 1년 | 3년 | 출입금지 |
| | | 나2. 고객 상호 | 3월 | 1년 | 3년 |
| | 다. 카지노영업장 외 고객 상호 폭행 등으로 인한 소란 행위 | | 주의 | 1월 | 3월 |
| | 라. 직원 등 및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행위 | | 1년 | 출입금지 | - |
| | 마. 허위사실 유포 등 균중심리 유발 행위 | | 1년 | 3년 | 5년 |
| | 바. 영업장내 오·폐물(침, 껌 등)을 투기하는 행위 | | 주의 | 1월 | 3월 |
| | 사. 영업장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 주의 | 1주 | 1월 |

| 구 분 | 출입제한 위반행위 | | 제한내용 | | |
|---|--|-------------------------------|------|---------|------|
| | | | 1회 | 2회 | 3회 |
| 2호 영업장 질서유지 관련 | 아. 고의적으로 타 고객 및 직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타고객에게 여비 및 팁 요구 등 금전 요구행위, 영업방해 목적의 저액권 반복교환, 공동시설 점유, 타 고객 게임간섭 등) | | 주의 | 6월 | 1년 |
| | 자. 습득물 관련 | 자1. 사용행위 | 1월 | 3월 | 6월 |
| | | 자2. 미신고 소유행위 | 주의 | 1월 | 3월 |
| | 차. 영업장내에서의 절도 행위 (회사자산 포함) | | 3년 | 5년 | 출입금지 |
| | 카. 좌석(테이블, 머신) 관련 부정행위 | 카1. 매도, 매수, 알선(금전거래 有), 호객 | 1년 | 3년 | 5년 |
| | | 카2. 알선(금전거래 無), 기타 부당이익 취득 | 6월 | 1년 | 3년 |
| | | 카3. 대리접수 | 3월 | 6월 | 1년 |
| | | 카4. 머신게임 좌석 단순 양도, 양수 | 주의 | 3월 | 6월 |
| | | 카5. 자진신고 또는 협조(매수자) | 주의 | 당일 | 1월 |
| | 타. 기타 영업목적의 각종 안내문(전단지/물품/명함 등) 유포 행위 | | 3월 | 6월 | 1년 |
| | 파. 당사 시설물 손상 및 파괴, 오염 행위 (파손물품 가액 변제 완료시까지 출입정지) | 파1. 비고의 | 주의 | (고의 적용) | |
| | | 파2. 고 의 | 6월 | 1년 | 3년 |
| | 하. 사채 관련 | 하1. 알선(금전거래 無) | | 1년 | 3년 |
| 하2. 이용고객 | | 1년 | 3년 | 5년 | |
| 하3. 자진신고, 수사협조(이용자) | | 주의 | 당일 | 1월 | |
| 거. 업무 수행중인 관계기관 종사자에 대한 언어폭력 행위(모독, 욕설 등 공포분위기 조성), 협박 또는 신체 폭행 행위(폭행성 신체접촉행위 포함) | | 1월 | 3월 | 6월 | |
| 3호 게임 진행 및 영업방해 관련 | 가. 타 고객(베팅)칩스, 당첨금, 크레딧, 티켓 무단이동·점유·사용(수령)행위 | 가1. 비고의 | 주의 | 3월 | 6월 |
| | | 가2. 고 의 | 1년 | 3년 | 5년 |
| | 나. 게임진행 방해 행위 (달러의 정상적인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 | | 1월 | 1년 | 3년 |
| | 다. 베팅금액 및 당첨금 수령 관련 허위 주장 | | 주의 | 3월 | 6월 |
| | 라. 장외게임 (장외 타인의 지시에 따라 게임) | | 주의 | 1년 | 3년 |
| | 마. 부정한 방법의 베팅 행위 (테이블) | | 당일 | 6월 | 1년 |
| | 바. 베팅한도를 미준수 하는 경우 | | 당일 | 6월 | 1년 |
| 사. <삭제> 베팅 및 Pay중개 후 수수료 요구 | 수수료를 요구 하는 경우 | 주의 | 1월 | 3월 | |
| | 수수료를 요구 하여 받은 경우 | 3월 | 6월 | 1년 | |

| 구 분 | 출입제한 위반행위 | 제한내용 | | | |
|-----------------------------|---|--|----|----|----|
| | | 1회 | 2회 | 3회 | |
| 3호 게임 진행 및 영업방해 관련 | 아. 게임 전문가 사칭 고객 유인 후 게임 | 6월 | 1년 | 3년 | |
| | 자. 게임관련 직원의 정당한 요구사항 불응 | 주의 | 3월 | 6월 | |
| | 차. 직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게임 테이블에서 핸드고객이 유무선 통신 및 기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주의 | 1월 | 3월 | |
| | 카. 상습적인 좌석점유 목적의 Credit방치 고객(관련부서 기준에 의한 상황실 직접 접수 시 적용) 및 타 고객 슬롯머신 게임진행 및 요구행위 | 주의 | 1월 | 3월 | |
| | 타. 동시 게임 행위 (테이블/머신게임·테이블 및 머신기기 2대 이상 동시게임) | 주의 | 2주 | 1월 | |
| | 파. 머신 1대 이상 점유 후 교차하여 다른 게임(머신, 테이블) 참여행위 | 주의 | 2주 | 1월 | |
| 4호 기 타 | 가. High1포인트 (Comp) 관련 부정행위 | 가1. 포인트 매개로 매도, 매수, 알선, 호객행위 등 부당이익 취득행위 | 1년 | 3년 | 5년 |
| | | 가2. 타인 신분증으로 포인트 카드를 부정 발급받은 행위 | 1월 | 3월 | 6월 |
| | | 가3.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 무단적립을 시도한 행위 | 주의 | 3월 | 6월 |
| | | 가4. 포인트 대여 및 양도를 통한 부정사용 등 | 3월 | 6월 | 1년 |
| | 나. 개인정보(고객, 직원 등) 무단 수집행위 (사업장 내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 등) | 1년 | 3년 | 5년 | |
| | 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영업장 시설(임직원 신상 포함)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사적으로 사용(SNS, 인터넷 등 게시)하는 행위 | 6월 | 1년 | 3년 | |

※ 비 고

- [별표5]의 1회,2회,3회라 함은 해당행위로 출입정지 된 후,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해제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다음에 동일사안으로 출입정지가 되면 2회로 인정하지 않음) 동일 사안으로 출입정지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횟수 초과로 출입정지 된 자가 다시 동일한 출입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마지막 횟수의 출입정지 기간을 적용한다.
- 2016.12.31. 개정 후 출입제한 위반행위 중 2호 아·카1·카2·파, 3호 가, 4호 가1의 경우 위반 행위 세부유형 별로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정 전 출입제한된 위반행위와 개정 후 세부유형 별 항목이 동일한 경우 그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별표5] 2호 영업질서유지 관련 “관계기관 종사자”라 함은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카지노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별표5]의 출입제한의 경우 위반행위 발생시 현장에서 고객에게 고지 후 출입제한을 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출입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카지노 출입관리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입장거절 세부내역(제9조 제1항 관련)

| 구 분 | 입장거절 대상 | 비고 |
|-----|---|---------------------------|
| 1호 | ◦ 복장이 타 고객으로 하여금 불쾌감 및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자 | 카지노 영업장 질서유지 |
| 2호 | ◦ 모자, 선그라스,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상착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자 (착용해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부서 판단 하에 협조가능) | |
| 3호 | ◦ 전염성이 있는 각종 질병이나 지병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 |
| 4호 | ◦ 영업장에 비치된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가 일정 기준치(노란색불) 이상인 자 | |
| 5호 | ◦ 약물중독 등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타 고객에게 불쾌감 및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 |
| 6호 | ◦ 정신장애, 불안장애, 심신미약 등이 외관상 명백히 의심되는 자로 정상적인 의사소통 또는 게임진행이 불가하여 본인 또는 타 고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 | |
| 7호 | ◦ 무기류 소지 등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자 | 타 고객의 안전 위협 |
| 8호 | ◦ 회사가 지정한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자 | |
| 9호 | ◦ 영업목적의 각종 안내문(전단지, 물품, 명함 등)을 소지하고 입장을 시도하는 자 | 위법행위 또는 기타 영업목적 |
| 10호 | ◦ 국내외 타 카지노, 불법 카지노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자 | |
| 11호 | ◦ 본인확인에 필요한 「별표2」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본인확인을 거부한 자 (무인민원발급기 고장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인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외) | 기타 출입관련 회사 요구사항 비협조 |
| 12호 | ◦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음성 녹음 포함)을 목적으로 입장하려는 자 | |
| 13호 | ◦ 출입관리 담당부서 직원이 실시하는 음주검색 및 물품검색 등을 거부하는 자 | |
| 14호 | ◦ 회사 및 직원 등을 상대로 고소 및 고발행위를 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영업장에 출입하려는 자 | |
| 15호 | ◦ 지침 제6조 또는 제7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조치 이전 제반 사실관계 등 파악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자 (단, 제반 사실관계 등 파악 이후 출입제한 등의 조치가 행하여진 때에는 입장거절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 |
| 16호 | ◦ 당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본인이 부당 이득을 취한 이후 손해액 또는 부당이득금을 변제·상환하지 않은 자로서 관련부서에서 요청한 자 (입장거절 시작일을 정하여 요청) | |
| 17호 |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자 (영업장내 발생시 즉시 퇴장조치 후 입장거절함) | 위법행위 또는 기타 영업목적 |

[별표7]

출입제한 및 해제관련 구비서류 (제8조 제1항, 제16조 제5항, 제19조 1항 관련)

| 구분 | 요청자 | 구비 서류 | 비고 |
|-------------------|-----------|--|-----|
| 출입제한 요청 | 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제한 요청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요청자 신분증 사본 ○ 대리 요청시 : 위임장 및 본인발급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후견인은 동의서 및 법원 결정문 등의 입증서류) [선택사항] 피 요청자 사진 1매 | 각1부 |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제한 요청서 ○ 방문 요청시 : 요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 우편 요청시 : 요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사항] 본인 사진 1매 | 각1부 |
| | 관련부서 | ○ 출입제한 요청서 (또는 협조문서) | 1부 |
| 출입금지 대상 | 직원 및 그 가족 | ○ 회사 전산시스템 활용 본인등록 | 각1부 |
| | 협력업체 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출입제한 요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각1부 |
| 출입제한 해제요청 | 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제한 해제 요청서 (※ 방문접수) ○ 요청자 신분증 사본 ○ <삭제>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후견인은 동의서 및 법원 결정문 등의 입증서류) [신설 2017.9.22] ※ 필요 시 가족확인 증빙 요구 가능 | 각1부 |
|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제한 해제 요청서 (※ 방문접수) ○ 요청자 본인 신분증 사본 ○ <삭제> | 각1부 |
| | 관련부서 | ○ 출입제한 해제 요청서 (또는 협조문서) | 1부 |
| 출입금지 해제 대상자 | 직원 및 그 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서류 불필요 ※ 단, [별표4]에 따른 대상별 정지기간 경과 후 해제 가능 | - |
| | 협력업체 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증명서 ※ 단, [별표4]에 따른 대상별 정지기간 경과 후 해제 가능 | 각1부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 이내 유효하며, 출입제한 및 해제 대상자와 요청자 외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